

2016년도 임금협약서

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.

- 다음 -

제1조(임금의 구성) 임금은 근로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.

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연봉
- ② 연봉외 수당

제2조(연봉) 2016년도 연봉인상은 전년도 수권인건비 대비 3.0%로 하회 누적 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지급시기) 2016년도 연봉인상분은 10월 급여에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4조(업적성과급) ① 연구원은 차년도 업적성과급을 지급토록 한다.

- ② 지급방법은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지급한다.
- ③ 연구원 노사는 지속적으로 업적성과급 재원확대 및 지급 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내·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.

부 칙

제1조(유효기간)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조(협약서의 공개) 이 협약은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제3조(협약의 개정) 이 협약은 유효기간 중이라도 정부의 임금 인상 지침, 관계법령 개정 등 변화가 있을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이 협약을 개정할 수 있다.

2016. 10. 12.

한국전자통신연구원
원장

이상훈
이상훈

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
위원장

한주동
한주동